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 (이인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57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이인영·박정현·손명수

박상혁 • 이정문 • 한정애

강준현 • 전진숙 • 이수진

백승아 • 이연희 • 장철민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친일 재산 국가귀속을 담당해왔으나 2010년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고, 2010 년 7월 12일부터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만을 승계(국무총리 훈령 근거)하여 최근까지 수행하고 있음.

현재 친일재산 조사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 부재한 상황으로, 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 제대로 된 친일재산의 국가 귀속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바, 친일귀속재산수탁 및 매각현황에 따르면 2009년 719필지, 2010년 663필지 이후 2011년 3필지, 2012년과 2013년은 전무하며 2024년에도 1필지만 수탁되었음.

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」을 폐지 하고 이 법을 제정하며, 적극적인 친일귀속재산의 발굴 및 환수를 위해 보고 및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하고자 함(안 제1조 등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폐지법률안」(의안번호 제6261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 법률 제 호

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안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. 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- 1. "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(이하 "친일반 민족행위자"라 한다)"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 - 가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 호·제8호·제9호의 행위를 한 자(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). 다만,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.
 - 나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(爵位)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. 다만.

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·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 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.

- 다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·처형·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
- 2. "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(이하 "친일재산"이라 한다)"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·일전쟁 개전 시부터 1 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·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. 이 경우 러·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.
- 제3조(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) ① 친일재산(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·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)은 그 취득·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.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

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.

- ②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조(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)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 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5조(위원회의 업무 등)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
 - 2.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
 - 3.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
 -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,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하는 경우 「일제강점하 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.
- 제6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.
- 1. 판사·검사·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
- 2.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
- 3. 역사고증·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
- 4.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
-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, 2인은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.
-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.
-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.
- 제7조(위원회의 의결)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8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, 그 직무를 통할한다.
 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9조(위원회의 활동기간)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 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.
 -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 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.
- 제10조(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3. 정당의 당원
 - 4. 「공직선거법」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
 - 5.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
 - 6.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자
 - ②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.
- 제11조(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)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 -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.

- 제12조(사무처의 설치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.
 -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.
 -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,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,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.
 -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- 제13조(직원의 신분보장)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·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·휴직·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- 제14조(자문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 -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,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,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위촉한다.
 -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・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.
- 제15조(위원회의 운영 등)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16조(비밀준수의무)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·문서·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된다.
 - 1.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
 - 2.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
 - 3.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
 - 4.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
- 제17조(자격사칭의 금지)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,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.
- 제18조(유사명칭사용의 금지)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- 제19조(조사의 개시 등)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.
 - ②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

- 한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 결정 때까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④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.
-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해당 조사대상자,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 다.
- 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⑨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

- 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⑩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0조(조사의 방법)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1. 친일재산을 관리·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
 - 2. 친일재산을 관리·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
 - 3. 관련 국가기관·시설·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요구
 - 4.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
 -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
 -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·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수 있다.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.
 -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

- 의 대상인 기관·시설·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,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.
-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.
-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1조(이의신청 등 불복절차) ① 위원회의 실지조사, 자료제출 요구,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,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. 제22조(조사대상자의 불출석)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

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

- 제23조(결정 등의 통지)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·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- 제24조(공무원 등의 파견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5조(국가귀속재산의 사용)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 은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제26조(포상금의 지급)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자나

- 친일재산의 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에 관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②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27조(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)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.
- 제28조(벌칙)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1.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
 - 2. 제17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
 - 3.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
- 제29조(과태료)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.

- 1.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
- 2.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
- 3.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
- 제30조(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) 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·징수한다.
 -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.
 -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 -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「비송사건절차법」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.
 -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.

⑥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」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